

● 제330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531)

2025. 04. 2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김영옥 의원 발의】

의안번호 2531

I.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영옥 의원(찬성 27명)

나. 발의일자 : 2025년 03월 31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04월 02일

2. 제안이유

- 최근 5년간 10대와 20대 마약류 사범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31.4%로 30대(25.4%)를 넘어섰으며 2023년에는 전체의 36%에 달함.
- 서울시 범죄 발생 지역별 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 서울 6,271명(전국 22.7%)으로 경기도(6,678명/24.2%) 다음으로 높음.
- 마약은 중독성과 유해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식품명칭 또는 상호명에 사용되고 있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저해할 수 있으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친화적으로 비쳐질 수 있음.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는 시·도지사

는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마약류 관련 표현이 포함된 문구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고, 변경하려는 영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식품 등에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 변경 권고 (안 제7조제1항제4호).
- 식품 등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의 표시 또는 광고를 변경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 지원 (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2025. 04. 05.~ 2025. 04. 09.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주요 내용별 검토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식품 등에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안 제7조제1항제4호),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를 변경 조치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사업) ①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제7조(사업)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식품 등에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 변경 권고</u>
4. (생략) ② (생략) <u><신설></u>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식품 등

제8조 (생 략)	<u>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의 표시 또는 광고를 변경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	---

나. 검토의견

- ‘마약류’는 그 중독성과 유해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약류’를 강제적일 정도로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한 의존성이 있고, 약물사용의 양이 증가하는 내성이 나타나며, 사용 중단 시, 견디기 힘든 금단증상이 발생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피해를 가하는 약물이라 정의하고 있음¹⁾.
- 그런데 이러한 ‘마약류’ 관련 용어가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 맛보면 중독성이 있어 계속 찾게 된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식품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²⁾ 어린이,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
 - 특히, 마약떡볶이, 마약김밥 등 간판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

1) WHO (1993). The ICD-10 Classification of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Diagnostic criteria for research.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Retrieved from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9241544554>

2) 남윤정 (2025.02.03.) "한국 음식에는 '마약' 들어있다고?"...시장 갔다가 깜짝 놀란 외국인 관광객, 서울경제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GOTRLC1GN>

하는 대부분의 식품접객업소가 초·중·고등학교 주변에서 영업을 하고 있음³⁾).

- 마약김밥이나 마약커피 등 마약 용어의 상업적 사용이 마약에 친숙한 느낌을 주느냐는 물음에 청소년의 절반 정도(48.6%)가 친숙하게 느끼게 한다고 응답함⁴⁾).

○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들에게 자칫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마약김밥’과 같은 표현을 식품 등에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그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또한, 2024년 7월 3일자로 시행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영업자 등에게 식품 등⁵⁾에 마약, 대마, 코카인 등의 마약류와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간판, 메뉴판 또는 제품 포장재를 변경할 경우에는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⁶⁾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다음 페이지 참조).

3) 시민건강국 (2024). 「식품등의 마약 용어 변경 비용지원」 계획.

4) 손애리 (2023).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5)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및 이를 넣거나 싸는 것(그 안에 첨부되는 종이 등을 포함한다)에 적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6) 지원금액은 업체당 간판 200만원, 메뉴판 50만원, 제품 포장재 2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함.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시행 2024. 7. 3.] [법률 제19916호, 2024. 1. 2., 일부개정]

제8조의2(마약류 표시·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 마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시 또는 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8조의3(마약류 등 표시·광고의 범위)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 마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를 말한다.

1. 마약
2. 대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양귀비
4. 아편
5. 코카인
6. 헤로인
7. 모르핀(물핀)
8. 코데인
9. 펜타닐
10. 케타민
11. 프로포폴
12. 필로폰
13. 엑스터시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명칭과 유사한 표현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명칭

시행규칙 제8조의4(비용지원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표시·광고에 사용된 간판, 메뉴판 또는 제품 포장재를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마약 등 명칭 사용 표시·광고 변경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표시·광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자료
 2. 예상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
 3.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4.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참고로 현재 서울시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 중인 업체는 19개소(마약 14, 양귀비 5)이며,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사용 중인 마약류 용어 변경을 지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서울시에 ‘마약류’ 용어 사용 업체 현황(2025. 3월 말 기준)>

연번	업소명	관할 자치구	업종	업태
1	마약낙곱새 광진점	광진구	일반음식점	체인점
2	마약낙곱새 송파점	송파구	일반음식점	체인점
3	마약낙곱새 관악점	관악구	일반음식점	체인점
4	마약낙곱새 구로구점	구로구	일반음식점	체인점
5	마약낙곱새 성산점	마포구	일반음식점	체인점
6	마약낙곱새 은평점	은평구	일반음식점	체인점
7	마약떡볶이	관악구	일반음식점	체인점
8	마약떡볶이	구로구	일반음식점	체인점
9	찌니네 마약통닭	마포구	일반음식점	체인점
10	찌니네마약통닭	은평구	일반음식점	체인점
11	마선생마약국밥 서울묵동점	종량구	일반음식점	체인점
12	마선생마약국밥 서울상봉점	종량구	일반음식점	체인점
13	마선생 마약국밥 서울묵동점	종량구	일반음식점	체인점
14	마선생마약국밥 이문점	동대문구	일반음식점	체인점
15	카페양귀비	동대문구	휴게음식점	개인
16	양귀비	종량구	일반음식점	개인
17	양귀비짬뽕	강남구	일반음식점	개인
18	양귀비짬뽕	용산구	일반음식점	개인
19	양귀비짬뽕	마포구	일반음식점	개인

※ 자료: 식품정책과 제출자료

※ 집행기관 의견(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소관부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마약류 표시·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에 따른 ‘조레’ 개정이므로 ‘원안’ 의견을 제출함.

2 종합의견

- 청소년들에게 자칫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마약김밥’과 같은 표현을 식품 등에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그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또한, 2024년 7월 3일자로 시행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영업자 등에게 식품 등에 마약, 대마, 코카인 등의 마약류와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간판, 메뉴판 또는 제품 포장재를 변경할 경우에는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문 의 처

우현재 입법조사관 (02-2180-8155)